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184만1천원”을 “193만3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7만3천원”을 “133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7만6천원”을 “81만4천원”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3조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7의2와 같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

다.

[별표 2]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1.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577	5급	1,344
1급 2항	2,430	6급 1항	1,226
1급 3항	2,327	6급 2항	1,129
2급	2,069	6급 3항	759
3급	1,934	7급	426
4급	1,622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358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575
3) 부모 또는 조부모	1,335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177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367
3) 부모 또는 조부모	1,158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432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23
3) 부모 또는 조부모	410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 1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30만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061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 상이처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41

[별표 7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26조의3 관련)

1.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129	3급	805
1급 2항	1,129	4급	493
1급 3항	1,129	5급	215
2급	940	6급 1항	97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29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446
3) 부모 또는 조부모	206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48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38
3) 부모 또는 조부모	29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6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97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생략)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u>184만1천원</u>	1. ----- ----- <u>193만3천원</u>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u>127만3천원</u>	2. ----- ----- <u>133만7천원</u>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u>77만6천원</u>	3. ----- ----- <u>81만4천원</u>
<u><신 설></u>	<u>제26조의3(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3조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7의2와 같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